

준비 서면

사건 2005구합33142 재임용 거부처분취소 [제 1 행정부 권순일 부장판사]
원고 김명호, 서울시 x x x

피고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서울 종로구 삼청동 25-1
전화 : 02-725-0494 전승 : 02-725-4189

피고측 답변서에(2005년 12월 29일 수령)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목조목 반론을 제기합니다.

<피고측 답변서>

1. 피고가 2005. 4. 4. 청구취지 기재 원고의 재임용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 청구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한 사실은 인정합니다.
2. 그러나, 원고는 1996. 3. 13. 위와 동일한 사유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1996. 4. 23. 각하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문을 송달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소청심사청구는 위와 같이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그 이후 이루어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나, 위 결정에 따라 제정된 법률이 달리 규정한다해서 위 확정의 효력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부 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해도 재임용 거부는 정당하여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합니다.

<반론>

1. “이 사건 소청심사청구는 위와 같이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그 이후 이

루어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나, 위 결정에 따라 제정된 법률이 달리 규정 한
다 해서 위 확정 효력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부 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고”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의 주장은 다음의 대법원 판례에 모순되는 것입니다.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된 경우, 그 확정
력의 의미(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11288 판결)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 받은
자가 당해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더 나아가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
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위 판례에 따르면, “교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우리 위원회의 재심 청구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다”는 사유로 각하한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의 1996년 결정은 기판력이
없는 것입니다.

2. “가사 그럴지 않다 해도 재임용 거부는 정당하여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
어야 합니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의 모순된 주장

피고,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는, (원고의 재임용 탈락의 결정적 사유인)
정직3월의 징계에 대하여(참조: 교수재임용심사평정표, 갑 제6호증의 2),
원고가 제출한 재심청구(사건: 96-2 정직3월 처분 취소청구, 갑 제8호
증)에서 정직3월을 견책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재임용 거부가 정당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스스로의 결정도 부
인하는 모순된 것이며, 피고가 견책 사유로서 인정한 학점부여도 평등의
원칙에 벗어난 것입니다.(참조: 성대교무처장의 공문 및 손태열 교수의

편지, 갑 제10호증)

뿐만 아니라, 학점부여로 인한 징계처분이 성균관대학에서 없었음을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통하여 입증하려고 합니다.

나. 피고의 불성실한 답변과 방어방법의 실기

소장 송달 받은 날부터(2005년 11월 7일 원고 수령)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도(민사소송법 제256조) 지키지 않은, 피고의 뒤늦게 제출된 답변서는 무성의한 것으로 신성한 법원을 모독하고 있습니다.(민사소송법 146조 적시제출주의, 149조 방어방법의 각하)

민사소송규칙 제65조 제1항에(답변서의 기재사항) 의하면, “답변서에는 법 제256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74조 제1항의 각호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청구의 취지에 대한 답변과 청구의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적어야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피고는, 위 규칙 제65조와 민사소송법 제274조 제1항의 제4호 5호에 따라, 원고의 주장들에 대하여,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며 구체적인 ‘방어’ 진술, 즉 다시 말해서, 책임용 거부가 정당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은 무성의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결론>

불성실한 피고의 주장을 기각 내지 각하 시킴으로써, 신속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1월 2일

위 원고 김명호

서울행정법원(제1 행정부) 귀중